

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	상호(법인명)	대표자
	사업장주소	업종
	사업자등록번호	전화번호

상시고용인원수의계산

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(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)	② 평균인원수 (① / 월수)
---	---------------------

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(단위: 원)
(일용근로 소득은 제외)

월	인원	적용연도		직전연도		비고
		총지급액	소득세징수액	총지급액	소득세징수액	
1월						
2월						
3월						
4월						
5월						
6월						
7월						
8월						
9월						
10월						
11월						
12월						
합계	명					

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원천징수의무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1. "② 평균인원수"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,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.
- 2. "적용연도"의 총지급액(비과세포함)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.
- ※ "적용연도"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 다만,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※ 이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